



우리금융그룹

우 서울시 중구 회현동 2가 10-1 우리금융디지털타워 4층,
도로명주소:서울시 중구 소공로 48 (회현동 2가) 우리금융 /전화 02)2002-3000
디지털타워 4층

/Fax: 02-2002-5791,
전자팩스:0505-001-641
0

우리 자산:제 520-0306 호

발신일자 : 2024.03.06

수 신 : 금융감독원 금융투자검사2국 자산운용기획조정팀

참 조 :

제 목 : 신탁업자 요구 미이행 사실 보고

1. 귀원의 일익번창하심을 기원합니다.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7조에 의거 첨부와 같이 요구 미이행 사실을 보고합니다.



첨부 : 집합투자업자의 신탁업자 요구 미이행 사실 보고 1부. 끝.

주식회사 우리은행
자산수탁부장



집합투자업자의 신탁업자 요구 미이행 사실 보고

법 제24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탁업자의 운용지시 또는 운용행위의 철회, 변경 또는 시정요구에 대하여 집합투자업자가 3영업일 이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을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감시대상	집합투자업자명	포트코리아자산운용
	집합투자기구명	포트코리아 스마트 인컴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제3호
집합투자업자 운용지시·행위의 법령등 위반내용		레버리지 200%제한 초과 (신탁계약서) 레버리지 평가액 5,652,444,504원 / 순자산 (-) 38,839,643원
수탁회사 조치사항	철회요구사항	
	변경요구사항	
	시정요구사항	비율초과사항 통지함
요구일자 및 이행일자	수탁회사요구일자	2024.2.23
	집합투자업자 이행일자	2024.2.28현재 미이행
기 타 사 항		역외펀드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상품의 평가손실로 인한 비율 초과 의 건

2024년 03월 04일

우리은행 자산수탁부장

담당자 : 차장 곽영준 (2002-4898)

